

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 고시

「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」 제7조 제2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
2023. 2. 2.

경 상 남 도 교 육 감

[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」에 따라 경상남도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“학교”라 한다)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학교에 적용한다.

제3조(협의회 구성) ① 학교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8인 내외로 구성하고, 간사 1인을 둔다.

③ 회장은 학교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당연직 위원은 교감, 학습지원 담당교원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.

1. 담임교사 및 교과(전담)교사

2. 전문상담(교)사
3. 보건교사
4. 행정실장
5. 교육복지사
6. 특수교사
7.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간사는 학습지원 담당교원으로 한다.

⑥ 협의회는 두드림학교 다중지원팀 등과 연계·통합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협의회 운영 등)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협의회의 회의는 매 학년도의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할 경우, 입학·편입학·전학 등의 사유로 새로 학습지원대상 학생 선정이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.

⑤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5조(심의사항) 협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
2.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계획
3. 학습지원대상학생 개별 지원 방향
4. 그 외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

제6조(수당 및 여비)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외부위원(교직원이 아닌 외부위원)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외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.